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4.7.20.(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7월 7일
- 회부일자 : 2004년 7월 7일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4. 7. 15 :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을 조정 배치 하고,
-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은 기구·정원 범위 내에서 소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465명 ⇒ 2,484명 (증19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66명 ⇒ 1,383명 (증17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8명 ⇒ 60명 (증 2명)
 -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 9. 11 조례 제2408호로 전문개정 운용 중에 있으며,

-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과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강을 위해 승인 받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19명으로 의회 2명과 집행부 17명이며 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변동이 없으며, 금번 증원으로 총 정원은 2,465명에서 2,484명임.

※ 의회사무처 정원 : 58명 → 60명 (증 2명)
집행기관 정원 : 1,366명 → 1,388명 (증 17명)

-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9명, 6급이하 9명이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부서별 정원조정계획』 과 같이 배치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현재 우리도 표준정원 운영 실태와 혁신분권담당기구의 한시정원 11명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9조

⑤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 조정할 수 없다.

⑥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서별 정원 조정계획

부서별	정원 조정	직렬·직급	조정내역	비고
계	19명			
감사관실	3	행정5급 1 행정7급 1	공직윤리담당 신설	정원승인
기획관실	2	행정5급 1 행정6급 1	교육지원담당 신설	자체조정
예산담당관	2	행정5급 1 행정7급 1	투자심사담당 신설	자체조정
혁신분권담당관	11	행정4급 1 행정5급 2 6급 3 7급이하 4	행정·토목 1 혁신분권담당관 신설 - 혁신기획팀 - 분권이양팀 - 균형발전팀	정원승인
도정혁신기획단	△11		혁신분권담당관으로 변경	
세무회계과	1	행정·세무7급 1	채납징수 전담인력 보강	자체조정
사회복지과	1	행정7급 1	'05전국장애인체전 준비인력 보강	"
농정과	2	행정5급 1 행정·농업7급 1	농업협상대책팀 (TF팀)	"
농산지원과	1	농업5급 1	바이오농업담당 신설	정원승인
문화예술과	2	행정5급 1 행정6급 1	문화산업담당 신설	정원승인 자체조정
의회사무처 (운영전문위원실)	2	행정·토목· 건축·환경 5급 1 행정6급 1	입법지원담당 신설 특위지원담당 신설	정원승인 자체조정
바이오산업추진단	1	행정·시설4급 1	사업지원과 보강	자체조정
산림환경연구소	1	임업5급 1	산림환경과 신설	정원승인
축산위생연구소	1	축산연구관 1	유전공학팀 신설	"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2,465명”을 “2,48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66명”을 “1,383명”으로 하며, 동조 제4호중 “58명”을 “60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46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366명</u></p> <p>2.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997명</u></p> <p>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u>44명</u></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58명</u></p>	<p>제2조 (정원의 총수) <u>2,484명</u></p> <p>1. : <u>1,383명</u></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 <u>60명</u></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 ④ (생략)